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44
----------	------

제출일자 : 2024. 8. 23.  
제출자 : 달성군수 

##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녀 보육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시간외근무 시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대상 및 일수 확대

- (확대)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연가가산(現 2년 미만)(안 제14조)
- (확대)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 3일 가산 (現 2일)(안 별표 4)

다. 장기재직휴가 확대

- (신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10일(안 제15조)

라. 자녀 보육휴가 신설(안 제15조제9항)

- 8세 이하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 연간 10일
- 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경우 : 연간 15일
- 부부 공무원의 경우 각각 부여

마. 경조사휴가 확대(별표 5)

- (확대)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現 1일)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4. 7. 26. ~ 8. 15.)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10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20일(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일)
3.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30일(단, 제1호 및 제2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60일)

제1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연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공무원의 경우 각각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별표 4]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

###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 <신 설>	제13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u>2</u> 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 ----- ----- <u>5</u> 년 ----- -----.
제15조(특별휴가) ① ~ ② (생략) ③ 군수는 <u>10년</u>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 ⑧ (생략)	제15조(특별휴가) ① ~ ② (생략) ③-----5년----- ----- ----- ----- ④ ~ ⑧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20일</p> <p>2.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30일 (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일)</p>	<p>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10일</p> <p>2.----- (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일)</p> <p>3.----- (단, 제1호 및 제2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60일)</p>
<p>&lt;신 설&gt;</p> <p>[별표 4]</p> <p>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p>	<p>⑨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 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8 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연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공무원의 경우 각각 사용할 수 있다.</p> <p>[별표 4]</p> <p>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p>
<p>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li> <li>-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li> </ul> <p>※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p>	<p>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li> <li>-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li> </ul> <p>※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자녀		1		결혼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출산	배우자		10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1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본인		20	입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개정 2024. 7. 2.)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영 제7조의7제2항 관련) (개정 2024. 7. 2.)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